

등록번호	푸른도시과-866
등록일자	2015. 1. 13.
결재일자	2015. 1. 1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자연생태팀장	푸른도시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협 조	안전치수과장		

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



서 대 문 구
푸른도시과

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

현재 운영 중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향후 지정 및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임

I 개 요

□ 관련근거

-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7(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)
-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(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)
-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11(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)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

□ 용어의 정의

- 산사태 :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 되는 것(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5호)
- 토석류 :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·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(「사방사업법」제2조제6호)
- 산사태취약지역 : 산사태(토석류 포함)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(산림보호법」제2조제13호)

※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, 「도로법」제8조의 도로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

-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: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산림청장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 (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9)

□ 조사구분 및 주체

- 기초조사 : 산림청장
 -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·규모 및 유형별 분류
- 실태조사 : 지역산사태예방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)의 장
 -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·붕괴·침식의 정도
 -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·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
 -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
- 조사시기 :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기초조사 실시 및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. 다만,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음

□ 실태조사 대상

- 산사태위험지도 1·2등급 및 토석류위험예측지도의 Red Zone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,
 -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, 주택지 등이 위치한 경우 → 산지사방 대상지
 -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은 대상지를 기준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 → 사방댐, 계류보전 사업 대상지

II

운영실태

□ 서울시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 방법

- 지정대상
 - 서울시 산지사면 조사 용역 자료의 D, E등급 대상지
 - 사방사업 대상지
- 지정시점
 - 사방사업 대상지 합동조사 및 확정 후 실시설계 용역 진행 기간

□ 문제점

- 산림청의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(2012년에 발의된 법안으로서 2013~2017년 산림청 최초 실태조사 진행중)
- 사방사업 대상지가 정해진 후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에 역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는 방식으로,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례상 정해져 있는 심의사항 중 대부분 심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
 - ※ 산사태취약지역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보다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, 토지 사용승낙 대체 등으로 운용하는 실정임
- 근거자료인 서울시 산지사면 조사 용역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
 - 「산사태취약지역」은 「산림보호법」에 근거한 사항으로 평가지표는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에 명시된 산사태 및 토석류 우려지역 평가판정표에 의거한 평가지표여야 하나, 용역의 결과는 「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「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」에 근거하여 위험도 평가가 되어 있음

※ 두 평가기준은 적용하는 대상지가 법령의 정의에 구분되어 있어 혼용되면 안되나
용역 결과는 혼용되어 적용하고 있음(급경사지 평가 등급 : A~E등급, 산사태
및 토석류 평가 등급 : 1~4등급)

- 현장 조사가 **실제와는 완전히 다른** 경우가 많으며, 용역 완수 전 관할 담당의
의견 없이 평가되어 있음. 아울러, **점수 산정시에도 오류가 산재**하고 있음

※ 첨부 「비예산 사업 대상지 검토 보고」참조

Ⅲ 개선 사항

□ 사업진행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시,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 내용 중 제1항만을 상정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(상정)
2.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미상정)
3. 대피장소 및 경제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(미상정)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(미상정)
5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미상정)

□ 사업진행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된 경우, 해제 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

- 제2항에 따른 예방사업(사방사업) 수립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위원회에서
심의를 거친 후, 해당 사업의 완료의 적정 여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해제
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현재 운용 방식으로는 해제 심의 자체가 어려움
- 해제는 지침상의 권고사항으로 법 및 조례에서 명시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
아니므로,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심의하지 않은 위원회에 안건으로의 상정은
법적 근거 없이 위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임

Ⅳ 향후 계획

- 2011년 이후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사방사업은 국비·시비 지원사업이며 사면정비
등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사방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으로, 이에
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시 조례 제3조 제1항만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
위원회 개최 및 취약지역 지정고시
- 예방사업 계획 수립을 심의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고시는 심의위원회의
의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
- 산림청 기초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우리구 필요에 따른 점검 용역 결과
등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예방사업의
의의가 가능하며, 예방사업의 적정성을 심의 후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
시 산림청 권고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해제

- 붙임 1. 산림보호법 질의 회신 1부
2. 비예산 사업 대상지 검토 보고(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용역 검토) 1부.

끝.